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0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설 훈·강득구·강병원

강선우・강준현・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노웅래 · 도종화 · 맹성규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서영교 · 서영석 · 소병철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 오기형 · 오영환 · 오영훈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유기홍・유동수・유정주 유건영 • 유관석 • 유미향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이개호 · 이광재 · 이규민 이낙연・이동주・이병훈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정일영 · 정정순 · 정청래

정춘숙·정태호·정필모 조승래·조오섭·조승천 조정식·주철현·진선미 진성준·천준호·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74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정의, 범위, 임기, 정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5·18민주화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등지로 확대 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 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 (안 제3조제9호 신설).
-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
-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70명으로 증원함(안 제17조제1항).
- 바.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23조제2항).
- 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에 특별기구 를 설치함(안 제35조제2항).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 일원에서"를 "광주 등지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 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 대한 인권침해사건
-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 4.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7.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8.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9.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
- 10.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 건
- 11.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8조제1항 본문 중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하여"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자문기구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중 "진상규명사건에"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진상규명사건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된다"를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처 리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 물·나무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 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5·18민주화운 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다.
-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

- 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을 "거부할"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을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으로, "자체"를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를 "제58조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 사람에"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 (掘土)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u>광주</u>	제1조(목적) <u>5.18</u>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	
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	1
년 5월 <u>광주 일원에서</u> 일어난	<u>광주 등지에서</u>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	
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	
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	
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을 말한다.	
2. "희생자"란 <u>5·18민주화운동</u>	2 <u>5·18민주화운동</u>
<u>당시</u>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과 관련하여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3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 다. (생략)

-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 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 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 2. 5·18민주화운동당시군의시민들에대한최초발포와집단발포책임자및경위,계엄군의헬기사격에대한경위와사격명령자및시민피해자현황
 -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 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L '	- 1
<u>م</u>			_
			
			_
나 나 /카페리 카스/			
나.・다. (현행과 같음)			
가이크 (리 기 크리 시 - 비 시)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 —
		· — —	· —
			_
	•		

-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 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 망, 상해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 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 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 4.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 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 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 작사건
-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 | 9.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 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
 - 명자의 규모 및 소재
- 7.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8.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 폐, 왜곡, 조작 사건
 - 등에 의해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
 - 10.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 11.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에 대한 탄압 사건
 -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18민 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건

임기는 <u>2년으로</u> 한다. 다만, 위 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 다.

②·③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 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 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u>50</u> 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② (생 략)
 - <신 설>

<u>3년으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u> 3년간</u>	
②	
2회에	
 한하여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u>70</u>)
<u>명</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자문기구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	
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	
	-
<u>기구를 둘 수 있다.</u>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 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상규명사건에------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 사할 수 있다.

<신 설>

-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생|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현행 략)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 ② -----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 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 다.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 로 정한다.
-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진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 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 용한다.
 - 과 같음)
 - 년----.
 - ③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①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

- ⑥ (현행과 같음)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 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 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10)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 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 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 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 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 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 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 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u> </u>
②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
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
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
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
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
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

<신 설>

-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 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농작물·나무등의 장애 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 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 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 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 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5·18민 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 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 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 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 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조치한다.

-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 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 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다.
- ①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5· 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 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 설>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 저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 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 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 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를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생 략)

②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에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u>거</u> 브	<u> 부할-</u> -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 안전부·국가정보원 등 진상규 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제57조(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 | 제57조(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 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 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 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 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 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 는 아니 된다.

-----설치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가 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 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으 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 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58조에 따라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 사람에-

② ~ ⑤ (생 략) <신 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발굴 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 입·굴토(掘土)등 일시 사용이 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 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

 한 사람
- 4. 5. (생략)
- ③ ④ (생 략)

		_						_	

- 1. 2. (현행과 같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 한 사람
- 2 -----
- 1. 2. (현행과 같음)
- <u><삭 제></u>
 - 4. 5.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